

의안번호	2217056
의 퇴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6.5.29.
추계번호	26B10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원 (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기본계획 (안 제74조의2) (A)	40	—	—	—	—	40	8
기후금융촉진위원회(안 제74조의3) (B)	12	12	12	12	12	60	12
추가재정소요 (C=A+B)	52	12	12	12	12	100	20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용역의 실시 내용 및 용역비, 위원회의 규모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4조의2(기본계획) 신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3.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 4.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74조의3(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신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3.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제2항) 촉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항) 1.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후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제4항)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제6항)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3	안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제1항)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제2항)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량규정
4	안 제74조의6(채권발행) 신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1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5	안 제74조의7(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신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4조의2(기본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74조의3(기후금융 촉진 위원회)		
3	안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기후금융 관련 활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기후금융 활동의 대상·범위 및 자금 공급·보증 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74조의6(채권발행)		·제3호 -개정안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기후금융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후금융 활동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 규모액 및 이율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74조의7(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제3호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하여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규모 및 수준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74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방향과 목표”, “국내외 환경분석 및 개선”, “국제협력”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¹⁾에 따라 금융위원회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가 수립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도 “기본방향 및 목표”,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내용 및 구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여건 분석 및 비전·전략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해당 연구용역에 따른 비용은 4,000만원임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사) 한국금융 연구원	2025. 12.~ 2026.3.	40	·대내외 금융산업 환경변화 및 주요 금융중심지 여건 분석 ·한국 금융중심지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비전 및 전략 제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과제 제시 ·기존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전략·과제 및 성과 등 평가

자료: 금융위원회

- 본 추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기간 첫 해인 2028 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000만원 (연평균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기본계획 (안 제74조의2)	40	-	-	-	-	40	8

주: 본 추계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설립(안 제74조의3)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인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지원협의회’²⁾의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함
 - 유사사례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사례를 참고할 때, 촉진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내 전담조직은 기존 공무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함
 - (위원 수) 개정안에 따른 촉진위원회의 위원 수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민간 위촉위원의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10명으로 가정함
 - (회의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2025년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참석수당 30만원³⁾)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2)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2022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며,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농식품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함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표 4] 기후금융촉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12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용역의 실시 내용 및 용역비, 위원회의 규모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